

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영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2672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6. 15.

발 의 자 : 박영순 · 김민철 · 박 정

윤영덕 · 김교홍 · 최인호

임호선 · 조정식 · 김종민

양경숙 · 이용빈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사선등의 기초 분야 연구, 공업·의료·환경 분야 등에 이용되는 방사선등의 연구,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결과의 산업화연구등을 위해 주관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방사선등과 관련된 정보의 생산·유통·관리를 위하여 정보관리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주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주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주연구기관 및 정보관리

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1조).

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지정요건”을 “지정요건 및 지정취소”로 한다.

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주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
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⑥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주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) ① ~ ④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1조(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주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</u></p> <p><u>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</u></p> <p><u>⑥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주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다.</u></p> <p><u>⑦ -----</u></p>
<p><u>⑤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</u></p>	

기관의 지정대상, <u>지정요건</u> ,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----- <u>지정요건 및 지정취소</u> ----- -----.
---	--